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6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1일

발의자 : 강수진, 고영옥,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2020년부터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되어 연구단체에 지원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정의하고 연구활동비 등 지원기준에 적용하여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정의(안 제2조)

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4. 4. 4. ~ 4.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성북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

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호 중 “의원연구단체”를 “연구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원연구단체”를 “연구단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을 “(연구활동비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지급을”을 “지원을”로, “지급된”을 “지원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 ③ 의장은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⑦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활동”을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u> (생 략) <u><신 설></u>	<u>제3조</u> (현행 제2조와 같음)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u> <u>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의원연구단체”란 <u>성북구의</u> <u>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u> <u>관계 없이 특정분야에 관한</u> <u>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u> <u>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u> <u>된 단체를 말한다.</u> 2. “연구활동비”란 <u>연구단체가</u> <u>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u> <u>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u> <u>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u> <u>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u> <u>을 말한다.</u> 3. “의원정책개발비”란 <u>지방의</u> <u>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u> <u>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u> <u>구용역비를 말한다.</u>
<u>제3조</u>(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 표자가 <u>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u> <u>신청서</u>를 작성하여 성북구의회	<u>제4조</u>(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 ----- ---- <u>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u> <u>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u>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u>별지 제2호 서식</u>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u>제4조 · 제5조</u> (생 략) <u>제6조</u>(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u>의원연구단체</u>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u>연구활동비</u>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그 밖에 <u>의원연구단체</u> 운영에 필요한 사항 <u>제7조 · 제8조</u> (생 략) <u>제9조</u>(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	<u>연구활동계획서</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별지 제2호서식</u>----- ----- -----. ④ (현행과 같음) <u>제5조 · 제6조</u>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u>제7조</u>(위원회 기능) ----- ----- -----. 1. <u>연구단체</u>----- ----- 2. (현행과 같음) 3. <u>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u> ----- ----- 4. (현행과 같음) 5. ----- <u>연구단체</u> ----- ----- <u>제8조 · 제9조</u>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삭 제>
--	--

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
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
서 지원하고, 각 연구단체에 지
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
구단체에 통보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
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
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
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10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
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
에서 지원하고,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
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
구단체에 통보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한다.

<신 설>

<신 설>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③ 의장은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제5항-----

---- 지원을 -----
지원된 -----
--.

⑦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기관·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2. 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지원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

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
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2. 조례 제1176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9.3.7.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위원회 -----

-----.

②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